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3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백선희 · 양부남 · 김준형
차규근 · 손명수 · 정춘생
황명선 · 강경숙 · 이해민
이수진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관리업자등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하게 할 수 있고, 소방청장은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인 표준자체점검비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자체점검의 점검 품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체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특정대상물에 대한 자체점검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안 제22조 제4항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를 “특정소방대상물의”로, “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표”를 “산정 세부기준, 공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하게 할 경우 그 관리업자등에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자체점검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대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u> 규모,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자체점검비”라 한다)을 정하여 <u>공표하거나 관리업자등에게 이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u> ⑤ 표준자체점검비의 <u>공표</u>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u><신 설></u>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특정</u> <u>소방대상물의</u> ----- ----- ----- ----- ----- ----- <u>공표하여야</u> <u>한다.</u> ⑤ ----- <u>산정 세부</u> <u>기준, 공표</u> ----- ----- ----- ----- ⑥ <u>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u> <u>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관</u> <u>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자체점검</u>

⑥ (생 략)	<u>하게 할 경우 그 관리업자등에 게 표준자체점검비를 지급하여 야 한다.</u> <u>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 관</u> <u>2. 지방자치단체</u> <u>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 다)</u> <u>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 방공사 및 지방공단</u> <u>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 또는 단체</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